

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복지정책과)

제출일 : 2020. 11.

1. 제안이유

-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이 개정되어 자활기금 적립이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어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등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[관련문서 : 경기도 복지사업과-15686(2020.09.11.)]

2. 주요내용

- 가.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변경되어 “존속기한 삭제“(안 제4조)
- 나. 제7조제1항(기금지원 등)의 대상을 제8조 자금대여 대상자에 포함(안 제8조)
- 다. 자활기금의 자금대여시 연체이자율 10%→ 5% 하향조정 (안 제9조)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이 개정되어 자활기금 적립이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는 ‘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’고 규정한 바,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고 자활기금의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며 자활기업의 자금대여 연체이자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자활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려는 것으로 검토결과,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